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지원 체계법”이고, 학교상담법은 “학생의 어려움을 병명·위험군으로 닫기 전에 학교 안에서 상담하고 해석하고 보호하는 상담권·상담절차법”입니다. 두 법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만든 큰 그릇 안에 학교상담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무엇인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복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여러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

즉, 이 법의 중심 단어는 통합지원, 연계, 조정, 자원 연결, 지원체계입니다. 학교 안의 여러 위원회와 프로그램, Wee클래스, 기초학력 지원, 진로 지원, 복지 지원, 지역 병원·상담기관·복지기관 등을 한 학생을 중심으로 연결하자는 법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도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하며, 관계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이나 지역 자원에 연계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

2. 학교상담법은 무엇을 다루려는가

반면 학교상담법은 단순히 “지원 자원을 연결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학교상담법의 출발점은 학생의 어려움이 곧바로 진단명, 문제행동, 위험군, 병원 연계로 번역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첨부된 10대 원칙 문서는 학교상담법을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을 구분하고, 정신건강 상태 조사·검사는 학교보건의 영역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상담·기록·전문기관 연계·사후지원은 학교상담법에 따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학교상담법은 검사를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보아야 하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학생을 위험군으로 고정하거나 병원·전문기관 연계의 자동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검사 이후에는 학생의 생활 맥락, 담임교사의 관찰, 상담교사의 전문 상담, 학생 자신의 언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가장 큰 차이: “지원 연결”인가, “상담의 원칙”인가

두 법의 차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교상담법
핵심 목적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	학생의 어려움을 병명·위험군으로만 보지 않고 학교 안에서 상담·해석·관계 회복을 보장
중심 언어	통합지원, 조기발견, 선정, 연계, 조정, 지역자원	상담권, 낙인 방지, 비밀보장, 생활맥락, 자기 언어, 관계 회복
주된 작동 방식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지원망 구축	담임교사-상담교사 협력, 상담 절차, 기록 보호, 의료 연계 기준 명확화
위험성	잘못 운영되면 “통합지원”이 “통합관리”가 될 수 있음	잘 설계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생 분류 체계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함
필요한 질문	이 학생에게 어떤 지원 자원이 필요한가	이 학생의 행동과 고통은 어떤 삶의 맥락과 마음의 언어로 읽혀야 하는가

한마디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법이고, 학교상담법은 그 네트워크가 학생을 낙인찍거나 관리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상담의 철학과 절차를 세우는 법입니다.

4. 두 법의 관계: 학교상담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빈칸을 메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복지·특수·학교폭력 관련 센터와 사업을 총괄·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다음 문제가 남습니다.

첫째,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기록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검사 결과가 상담의 참고자료인지, 지원 대상자 선정의 결정 근거인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각각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한 위기와 학교 안 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학교상담법의 영역입니다. 첨부 선언문도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에게 상담 책임을 떠넘기는 법도,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법도 아니며,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 구조를 법제화하여 학생을 위험군으로만 분류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이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히려 학교상담법의 필요성을 더 키운다

중요한 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학교상담법이 덜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 정보를 모으고,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러 기관과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교육부도 2028년까지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학생의 우울감, 자살 생각, 가족 갈등, 학교폭력 피해, 분노, 무기력, 등교 거부, 상담 내용 같은 정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 학생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가? 상담 기록이 학생을 돕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관리 자료나 행정 자료로 바뀌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있는가?

첨부된 토론회 결과보고서에서도 학생 내면 정보, 민감정보, 자기결정권, 동의권·거부권, 학교보건법 체계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상담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학생을 위한 법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6.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원망을 까는 법”**입니다.
학교상담법은 **“그 지원망 안에서 학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정하는 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어떤 자원을 연결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학교상담법은 “그 학생을 어떤 존재로 읽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학교상담법은 “그 협력 과정에서 학생의 마음, 상담 비밀, 자기 언어, 관계 회복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를 다룹니다.

7. 입법 전략상 가장 좋은 포지션

학교상담법을 추진할 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강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지원이 통합관리로 흐르지 않으려면, 학교상담의 원칙과 절차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학교상담법이다."

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학생을 돕는 자원 연결의 법이라면,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환자나 위험군으로만 만들지 않기 위한 상담권 보장의 법이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적으로 만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존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상담법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상담·정보보호·의료연계 기준을 보완하는 후속 입법으로 제안하면, 훨씬 설득력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두 법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이고,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으려다 학생을 환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입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한국 교육정책이 학생의 마음 문제를 '상담'보다 '관리·연계·지원 체계'로 먼저 이해해 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상담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자연스러운데, 실제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학생의 마음을 "누가, 어떤 언어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보다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조기 발견하고, 어떤 기관으로 연결하고, 어떤 지원망 안에 넣을 것인가"를 훨씬 익숙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1. 행정은 '상담'보다 '지원체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교육부는 이 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복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

이 말은 행정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흩어져 있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초학력지원, Wee센터, 교육복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학업중단 예방,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특수교육, 진로 지원 등은 이미 각 부서와 예산과 사업으로 존재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것들을 새로 철학화한 법이라기보다, 흩어진 사업을 "학생 중심 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법에 가깝습니다.

반면 학교상담법은 훨씬 어렵습니다.
학교상담법을 만들려면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누가 읽는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상담 기록은 행정기록인가, 보호되어야 할 내면 정보인가.
검사 결과는 상담의 참고자료인가, 위험군 분류 근거인가.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한 위기와 학교 안 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질문들은 행정이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간단한 조직도나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좋은 말이지만, 상담의 철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표현은 부드럽습니다. “맞춤”, “통합”, “지원”, “전인적 성장”, “교육받을 권리” 같은 말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도 이 법을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설명합니다. (정책브리핑)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빈칸이 있습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누가 어떤 언어로 해석할 것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 문제인가?
기초학력 문제인가?
학교폭력 문제인가?
심리·정서 문제인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가?
Wee센터나 외부기관 연계가 필요한가?

이 질문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상담법이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말을 잃었는가?
이 아이의 무기력은 병의 증상인가, 실패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삶의 신호인가?
이 아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기 언어로 말할 기회를 가졌는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지원 자원을 연결하는 법이고, 학교상담법은 학생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3. 한국 교육정책은 마음 문제를 ‘상담’보다 ‘위험관리’로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첨부된 시민연대 선언문도 현재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학교보건법상 정신건강 상태 검사 조항에 기대어 선별·분류·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검사는 학교보건의 영역일 수 있지만, 검사 이후 학생을 상담하고 기록하고 외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학교 안에서 사후 지원하는 과정은 학교상담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먼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사후관리라는 흐름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상담의 법제화가 아니라 지원·연계·관리 체계의 법제화로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상담법이 먼저 있었다면 이런 질문이 법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고 상담할 것인가?"

그런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중심 질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어떻게 발견하고, 선정하고, 지원망에 연결할 것인가?"

이 차이가 큽니다.

4. 왜 상담법은 늦어졌나: 상담은 권한·책임·비밀보장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학교상담법은 단순히 "상담을 잘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민감한 이해관계를 건드립니다.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인정하면, 담임교사의 시간·업무경감·수당·법적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 상담교사의 독립 권한과 기록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의 상담권을 인정하면, 학생의 동의권·거부권·정보 자기결정권 문제가 생깁니다.
학부모를 협력자로 세우면,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연계 기준을 정하면, 교육과 의료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첨부된 학교상담법 10대 원칙도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의 구분, 학생의 낙인 없는 상담권, 검사 결과의 제한적 사용,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협력 구조, 상담 기록과 학생 내면 정보 보호, 의료기관 연계 기준이 모두 핵심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법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순간, 학교와 교육청은 더 이상 "연계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만으로 책임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실제로 설명했는가.
학생의 동의를 받았는가.
상담 내용이 행정자료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검사 결과만으로 학생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협력할 시간을 보장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정책적으로 쉬운 길'이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먼저 만들어진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것이 훨씬 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말에는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자"는 말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자"는 말도 선한 명분을 갖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의 배경으로 그동안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교육부)

그러나 "학교상담법을 만들자"는 말은 곧바로 논쟁을 부릅니다.

상담교사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학생 정보는 누가 볼 수 있는가?
위기와 비위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상담 실패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래서 행정은 먼저 덜 논쟁적인 통합지원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학교상담법의 필요성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6. 더 깊은 이유: 학생을 '존재'로 보는 언어가 아직 제도 안에 없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국 교육정책 안에는 아직 학생의 마음을 삶의 맥락, 자기 언어, 관계 회복, 기준과 믿음의 문제로 읽는 제도적 언어가 충분히 없습니다.

위기 학생 보호의 언어는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언어도 있습니다.
복지 지원 대상자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언어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어떤 삶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가?”를 묻는 법적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상담법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국가가 학생을 돕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도구가 상담의 언어가 아니라 분류와 연계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프로젝트가 찔러야 할 핵심입니다.

7. 그래서 이 상황은 오히려 학교상담법 추진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논리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교상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을 통합관리하는 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학교상담법이 필요하다.

이 프레임이 가장 강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통합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학생의 자기 언어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심리·정서 어려움을 판단할 때, 상담교사의 전문 판단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교육자인가, 지원 대상자 발굴자인가?
상담 기록은 학생을 돕기 위한 자료인가, 통합지원 행정자료인가?
의료기관 연계 전 학교 안 상담 절차는 보장되는가?
학생의 내면 정보는 보호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법이 학교상담법입니다.

8.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은, 국가가 학생의 어려움을 ‘마음의 해석’보다 ‘지원 대상의 발견과 연계’로 먼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학교상담법이 없으면, 학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체계가 학생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

계가 될 수 있다.
학교상담법은 그 아이를 다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말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세우기 위한 법이다.